



행정자치부

행 정 자 치 부

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 3.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사 분할 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

1. 귀 부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 다만, 동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분리발주토록 규정된 공사,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에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된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한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하며, 분할·분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서 분리 발주하는 규정이 없는 공사를 분리발주 계약, 분리할 경우에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 또는 품질 등 관리의 지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공사를 일률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토록 지시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의 위반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3” 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인

수신자 국민안전처장관(소방산업과장), 서울특별시(계열사무관), 부산광역시(감사관), 대구광역시(감사관), 인천광역시(건설심사과장), 광주광역시(감사위원), 대전광역시(감사관), 울산광역시(감사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계약담당관), 강원도지사(감사관), 충청남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감사관),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총무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무관 **예병찬** 행정사무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최두선** 전결 2016. 4. 14.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732 (2016. 4. 14.)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번호 02-2100-3544 팩스번호 02-2100-3527 / ybchanya95@moi.go.kr / 대한민국 공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갑니다.